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1차 국토교통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택시 등 차량 공급 지연 시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431호)

2024. 11.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곽 현 준

목 차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2204431)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2
1. 택시 등 차량의 공급 지연 시 그 공급 시까지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 신설(안 제84조제3항)	2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2204431)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문진석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09. 30.
3. 회 부 일 : 2024. 10. 0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사용 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운행하는 것을 금지하되, 신규 자동차의 공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6개월의 범위에서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인해 자동차 제조사가 중형 택시 차량의 국내 생산을 중단하고 해외 생산분을 역수입하여 국내 수요에 대응하기로 함에 따라 택시 차량의 공급이 지연되는 경우 이전보다 그 기간이 한층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자동차 제조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자동차를 공급하는 때까지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3항).

Ⅲ. 검토의견

1. 택시 등 차량의 공급 지연 시 그 공급 시까지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 신설(안 제84조제3항)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자동차의 제작·조립이 중단되거나 출고가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공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를 공급하는 때까지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① . ② (생략) ③ 시·도지사는 자동차의 제작·조립이 중단되거나 출고가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공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u>6개월의 범위에서</u> 제1항에 따른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생략)	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를 공급하는 때까지</u> ----- ----- ④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¹⁾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²⁾ 및 [별표2]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을 정하고 있음.

현행 차령은 차종에 따라 승용자동차는 3년 6개월 ~ 10년, 승합자동차는 9년 ~ 11년임.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언급하고 있는 택시 차량의 차령은 일반택시(법인택시를 말함)의 경우 3년 6개월 ~ 6년, 개인택시의 경우 5년 ~ 9년임.

< 여객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여객법」 시행령 별표2) >

구분			기본차령	연장가능범위	비고
택시	개인택시	경형·소형	5년	2년	지자체 조례를 통해 기본차령 변경 가능 (+2년 ³⁾)
		2,400cc 미만	7년		
		2,400cc 이상	9년		
		환경친화적 차량*	9년		
		승합차	9년		
	일반택시 (법인택시)	경형·소형	3.5년	2년	지자체 조례를 통해 기본차령 변경 가능 (+2년)
		2,400cc 미만	4년		
		2,400cc 이상	6년		
		환경친화적 차량*	6년		
		승합차	9년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령”(車齡)이라 한다] 및 운행거리를 넘겨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자동차의 차령 등)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만 운송할 것을 조건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과 그 연장요건은 별표 2와 같다.

구분			기본차령	연장가능범위	비고
버스	노선버스 (시내·시외·마을·농어촌)		9년	2년	-
	전세버스		11년		
자동차 대여사업 (렌터카)	승용	경형·소형·중형	5년	2년	-
		대형	8년		
	승합		9년		
	캠핑카		9년		
특수여객	승용	경형·소형·중형	6년	2년	-
		대형	10년		
	승합		11년		
플랫폼 운송사업 (Type1)	승용	2,400cc 미만	4년	없음	-
		2,400cc 이상	6년		
		환경친화적 차량*	6년		
	승합		9년		

*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한정(하이브리드 제외)

*자료 : 국토교통부

한편, 시·도지사는 현행법 제84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해당 시·도의 자동차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임시검사를 통과하는 등 안전성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으며⁴⁾⁵⁾,

- 3) 국토교통부는 택시용 쏘나타 국내생산 중단(2023.7)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역 여건에 맞춰 차령을 최대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시행(2023.3)하였으며, 이러한 시행령 개정에 따라 후속조치로 45개 지자체(대구·청주·포항 등)에서도 차령 연장조례를 제정하였고, 업계·시민단체·지방의회 등의 의견 차이로 조례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택시용 쏘나타 후속모델의 국내 출고(2024.4)에 맞춰 현대자동차-지역업계 간 출고협약(2024.4~5월 간 전국 약 2천대 출고)을 적극 지원한 바 있음.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차량 생산중단에 대비하여, 택시 차령을 최대 2년 추가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4.05.2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제40조제1항 관련)

1. 차령 비교 나.

나.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이 목에서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 사업구역의 도로 여건, 사업구역 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운행거리 등을 고려할 때 기본차령(가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차령을 더하는 경우에는 기본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자동차의 차령 등)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법

현행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의 제작·조립이 중단되거나 출고가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공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인해 자동차 제조사가 특정 차량의 국내 생산을 중단하고 해외 생산분을 역수입하여 국내 수요에 대응하기로 하면서 택시 차량 공급 지연이 장기화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현행법에 따른 차령 6개월 연장 규정으로는 이에 대응하기에 미흡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음⁶⁾.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만 운송할 것을 조건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과 그 연장요건은 별표 2와 같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제40조제1항 관련)

2. 차령 연장요건

시·도지사가 해당 시·도의 자동차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의 공보에 차령 연장 등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동차의 차령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간만큼 연장된다. 다만, 그 연장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승용자동차는 1년마다, 승합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6개월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되,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와 「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5) 기본차령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에 1회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검사(주행·조향·제동장치·배출가스 등) 통과 등 안전성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차령을 연장할 수 있는 구조임.

< 차령 연장관련 자동차검사 기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 >

□ 차령연장 조건

○ 9년차부터 6개월에 1회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검사(주행·조향·제동장치·배출가스 등 24가지)를 통과한 차량에 한해 적용(지자체 재량)

* (교통안전공단 시행) 기본차령 內 정기검사*, 차령 연장기간 內 임시검사** 수검

· 정기검사(주기): 1년(차령 8년까지), 6개월(기본차령 9년 만료 당해)

· 임시검사(주기): 6개월(기본차령 만료 2개월 전부터)

6) 참고 기사 : 윤연정 기자, “30년차 택시운전사, 쏘나타가 없어서 ‘실직’하다”, 한겨레, 2024.5.16.
(출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0740.html, 최종검색일 : 2024.10.7.)

이처럼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의 통상적인 자동차 출고 시기를 고려하여 차량 대폐차⁷⁾를 준비하였으나 자동차의 제작·조립이 중단되거나 출고가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차량이 초과한 차량의 교체가 어려운 경우 영업을 중지해야 하는 우려가 있는바, 개정안과 같이 자동차를 공급하는 때까지 차량을 시·도지사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방법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에서는 신규운수종사자 유입 촉진과 종사자 처우개선 등 택시업계의 경영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사업주들의 일시적인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해 운수종사자들과 승객의 안전을 담보로 차량규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도 개정안이 명확한 시간적 한계를 규정하지 않고 문구가 다소 모호하여 차량 초과운행이 남용될 우려가 있고, 코로나19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자동차의 차량 제한 등)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 허가, 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代廢車: 차량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에 충당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량충당연한”이라 한다)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기에 이미 차령 연장을 통해 운수업계를 지원한 바 있으며 현재 자동차 생산이 원활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차령 완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참고 “주요 국내 판매 차량의 납기” 참조).

둘째, 개정안을 입법에 반영하는 경우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차령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사업용 차량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현행법 제84조제1항 단서 조항에서 시·도지사가 해당 시·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시행령 [별표 2] 2호 나목8)에서 연장된 차령 기간에 승용자동차는 1년 마다, 승합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6개월마다 「자동차관리법」 제

8)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1. 9.>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제40조제1항 관련)

2. 차령 연장요건

나.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승용자동차는 1년마다, 승합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6개월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되,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와 「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① 자동차 소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예정자를 말한다)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임시검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른 하위법령을 만들 때 이와 유사하게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는 택시를 사례로 들고 있으나, 개정안의 문구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⁹⁾(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모두 개정안의 대상에 해당함.

이와 관련하여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전세버스운송사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말한다.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농어촌·마을·시의 버스 등)’,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택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포함됨.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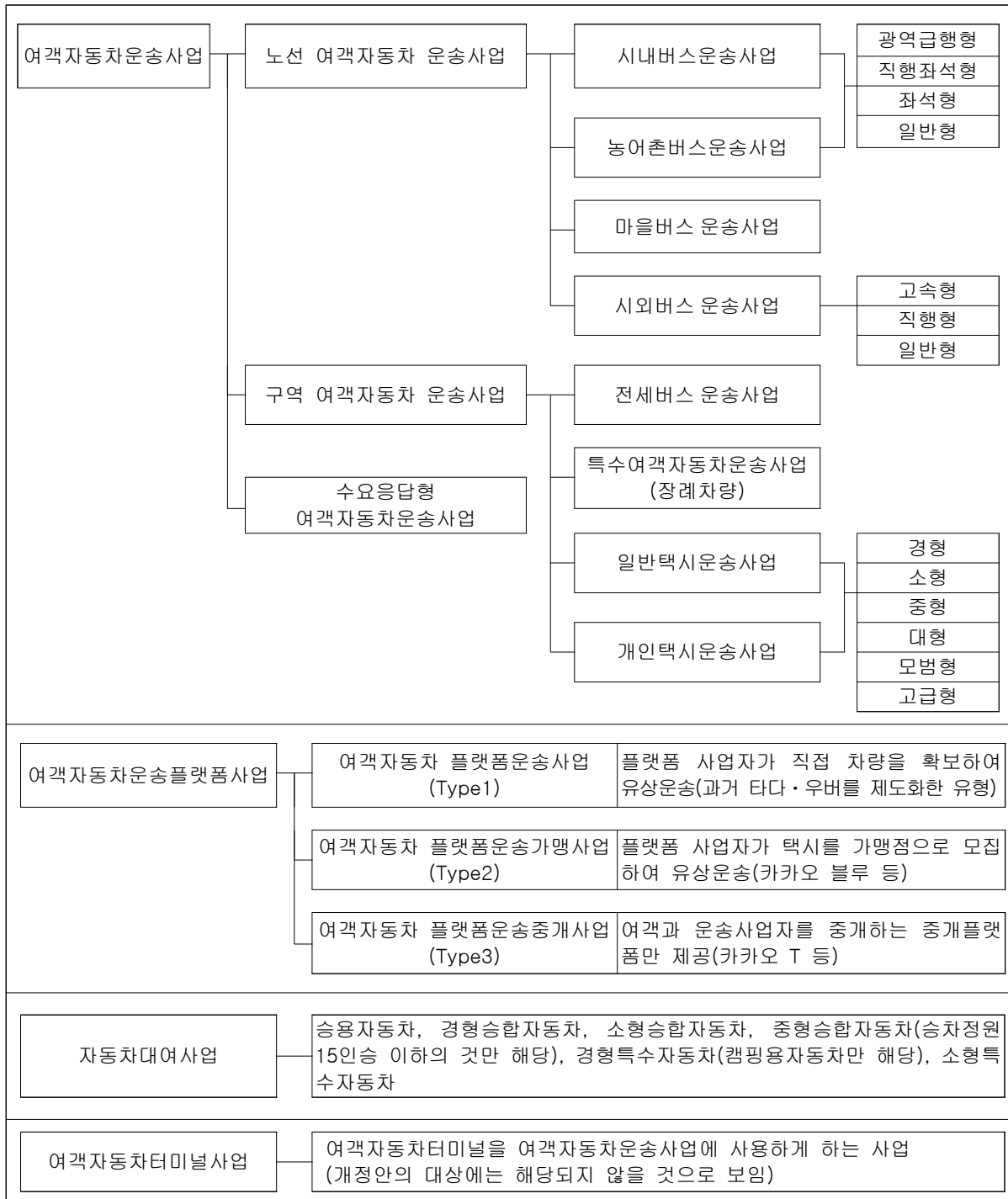
1.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3.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운행계통·운행시간·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
 - 나. 신도시, 심야시간대 등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하여 교통불편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의 규제특례를 받아 운행 등 실증과정을 거친 지역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조합연합회에서는 정부의 내연기관차 퇴출 및 친환경 차량 전환 정책으로 자동차 제작사에서 내연기관차(디젤, CNG) 생산라인을 감축하고 친환경 차량 제작에 집중하면서 생산 대수 절대 부족으로 인한 납기지연 및 국제 정세 변화로 인한 부품 공급지연, 반도체 수급 조절 등으로 출고가 원활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택시만이 아니라 버스도 개정안의 대상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서도 차량 공급지연 문제는 자동차 대여사업용 차량(렌터카)과 특수여객자동차(장래 차량)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는바 개정안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따라서, 이러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개정안의 입법 반영 여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용 대상의 범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종류 >



*자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하위법령,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구성

다. 관련 기관 등 의견

(국토교통부)

현행 법령은 여객운수용 차량 공급이 곤란한 경우(제작 중단, 출고지연 등), 차량을 6개월까지 초과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시·도지사 권한)하고 있음.

개정안은 차량 초과운행의 상한을 현행 ‘6개월’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 공급 시까지’로 정하고 있는데, 차량 초과운행의 명확한 시간적 한계를 규정하지 않고 문구가 다소 모호하므로 차량을 초과하여 운행이 남용될 우려가 존재함.

또한, 코로나 시기 차량 연장을 통해 운수업계를 지원한바, 현재 자동차 생산이 원활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차량 완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 시기에 한정하여 차량을 일시적으로 1년 연장(2020.9)하였고, 택시운송업은 필요시 지자체 조례를 통해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토록 완화(2023.1).

(운수업계)

사업용 차량 구매 부담을 완화하고, 차량 제조사에 의한 대폐차 지연 가능성을 낮출 수 있어 개정안이 필요함.

*법인택시연합회, 개인택시연합회, 버스연합회, 전세버스연합회, 렌터카연합회, 특수여객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현재 차량수급이 원활하고, 노후차량 운행에 따른 종사자 처우 악화, 승객 안전 및 서비스질 저하 등 우려가 있어 개정안에 반대함.

(지방자치단체)

충남, 부산 등은 차령 제도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어, 1~2년 등 연장 가능한 기한을 설정하는 수정안을 제시함.

(현대자동차)

현재 택시, 버스 등의 차량 생산이 안정적인 상황에서 차량공급이 지연될 가능성은 낮음.

문 의 처
02)6788-5584

참고

주요 국내 판매 차량의 납기

□ 여객운수 사업용 주요 차종의 납기

※ 출처: 현대자동차 / 산정방식: 납기 = 해당 차량의 계약 대기 고객 ÷ 월 평균 생산대수

○ 택시운송업용 주요 차종

구분	쏘나타 (중형택시, LPG)	그랜저 (중형택시, LPG)	아이오닉5 (중형택시, 전기)	스타리아 (고급택시, LPG)
2021년	3~4개월	1개월	46개월	2~3개월
2022년	9~10개월	1개월	24개월	10~11개월
2023년	21~22개월	1개월	1개월	5~6개월
2024년	3~4개월	1~2개월	1개월	3~4개월

* 쏘나타는 법인택시, 그랜저는 개인택시에서 주로 이용

** 쏘나타 생산 중단('23.7) → 중국 생산('24.4~) / 아이오닉5·스타리아('21년 출시)

○ 버스운송업용 주요 차종

구분	초저상 CNG	일렉시티 (전기)	일렉시티 (수소)	일렉시티 타운 (전기)	유니버스 ICE (디젤/CNG)	유니버스 (수소)
2022년	9개월	8개월	8개월	24개월	5개월	-
2023년	19개월	26개월	10개월	94개월	17개월	29개월
2024년	2개월	5개월	5개월	2개월	27개월	9개월

* 현대자동차 버스공장(전주) 생산량 증량('24.上)

○ 렌터카용 주요 차종

구분	아반떼		그랜저	
	가솔린	HEV	가솔린	HEV
2021년	4개월	4개월	2개월	2개월
2022년	10개월	18개월	7개월	9개월
2023년	4개월	15개월	6개월	6개월
2024년	4개월	14개월	2개월	2개월

*자료 : 국토교통부